

[홍콩] 2018년 1월 수출현안 · 수입제도 모니터링

I 수입제도 변경사항 / 수출현안

1. (통관/검역/라벨링*/수출현안)

□ 주요내용

❖ 수입규제 및 식품 안전 가이드라인

- 우유 · 유제품 · 냉동식품 · 당과류 · 육류 · 가금류 등 위험성이 높은 식품들은 보건과 지자체 조례 (cap 132)의 법적용을 받음.
- 야생 동물류 · 육류 · 가금류 등 수입은 식품 및 환경위생서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며 식품환경위생서에서 인정한 공급처를 통해서만 가능
 - 홍콩 법령 : 홍콩세관 - Chapter 132AK, Laws of Hong Kong
- 수입 육류 및 가금류 규정에 따라 수입국 식품청에서 발급된 증명서가 없거나 식품환경위생서의 공식적인 사전 허가가 없을시, 어떠한 육류 및 가금류도 홍콩 수입이 불가하며 위반시 HK\$50,000의 벌금이나 6개월의 구금형에 처함.
- 야생 동물류 · 육류 · 가금류 등을 홍콩으로 반입하기 위해 인증서를 얻고자 하는 경우, 일반적으로 타국의 식품청은 식품거래상에게만 사업상의 목적으로 공식적인 인증서를 발급한다는 것을 인지해, 수입국의 관련 기관 확인 및 개인 공식 인증서 발급이 가능한 곳에 방문해 신청
- 출처 : 홍콩식품환경위생서(2018.1)

1. 홍콩 식품 수입가이드

□ 달걀 수입가이드

- 수입 야생육류·육류·가금류·달걀류관리규정(제132AK장)내 달걀류 수입 조치가 2015년 12월 5일부로 재시행됨. 규정에 따르면 다음 상황에서 달걀류 수입 불가
 - 위생증명서가 없을 경우
 - 해당 달걀류가 환적되었으나 환적증명서가 없을 경우
 - 위생국이 발행한 서면허가서가 없을 경우
 - 위생국의 추가 조건을 따르지 않은 경우
- 달걀 수입 전 식품환경위생서 위생주입의 서면허가 필요
- 달걀류 수입상은 반드시 ‘식품안전조례 제 162장’에 따라 식품환경위생서 서장으로부터 등록한 식품수입상이어야 함.
- 달걀류 수입상은 식품환경위생서 또는 식품안전센터 홈페이지에서 FEHB 270 양식이나 전자양식인 e-FEHB 270을 사용해 서면허가 신청
- 신청 시 제출서류
 - 해당 수입 달걀류의 종류 및 수량
 - 해당 달걀류의 홍콩도착 예상일 및 운송방법
 - 해당 달걀류가 컨테이너 적재로 운반될 경우 해당 컨테이너 번호
 - 해당 수입 달걀류의 운송경로 확인에 필요한 모든 관련 문서
- 제출처는 식품안전센터 식품수출입팀 (주소 : 43/F, Queensway Government Offices)
 - 우편 송부 또는 팩스 (852-2521-4784)로 제출
 - 신청 획득 후 관련 서면허가는 신청인이 직접 수취하거나 신청인에 송부
 - 신청비는 무료
- 서면허가 유효기간은 서명일로부터 6개월이며 유효기간내 수입한 달걀류의

총량이 비준된 수량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관련 서면허가를 사용하여 1회 이상 운송 가능하므로 별도수입허가증 필요 없음.

○ 달걀류 수입 서면허가 발급의 경우(근무일 기준) 5일 이내 발급 가능

☐ 수입우유 및 우유음료

○ 홍콩은 우유와 우유 음료 수입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을 Chapter 132 관련법령, 조례 제54에 기반을 둠.

- 조례 제54에 규정된 기본적인 요구사항은 소비자의 소비에 적합하지 못한 어떠한 식품도 판매할 수 없음. 특히 우유와 우유음료의 규정은 법적 요건과 표준을 명시

○ 수입업자는 아래 주소에서 주요 조례 및 관련 법안 책자 구매 가능

- 주소 : Room 626, 6/F, North Point Government Offices, 333 Java Road, North Point, Hong Kong

○ 수입 신청 주의 사항

- 제조업체의 허가 승인 신청

- 홍콩에 수입하는 모든 우유·유제품 음료는 홍콩 식품안전청에서 승인한 제조업체의 제품만 수입 가능

- 홍콩 식품환경위생부서의 부장은 이를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

- 홍콩에 우유·유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수입 업체는 제품 수입 전 다음의 정보를 제공

a. 우유, 유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

b. 우유, 유제품 생산에 관련하여 생산 당국의 허가서

c. 라벨이 첨부된 우유, 유제품의 빈 용기

d. 우유, 유제품 및 가공 공장의 생산 설비와 물공급 시설, 편의 시설, 열처리 방법 등 정보

e. 생산국의 관할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서

f. 제품의 유통기한을 증명하는 제조업체의 인증서

○ 우유·유제품은 수화물의 홍콩 도착 전 홍콩 식품환경위생서의 허가를 받아야 홍콩 수입가능

- 공공 보건 지자체 조례 제 59(1)(c)에 따라 식품환경위생서가 수입식품 검사에

대한 특별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

- 수하물이 도착해 출고·판매 이전에 필요한 경우 수입식품의 샘플을 제공, 위생서의 검사 결과에 따라 수입업자에게 ‘판매 허가서’ 발행
- 식품환경위생서는 제조원의 허가 신청을 받은 12일 이내로 진행
 - 실제 배송물의 도착일·도착통지 받은 일 가운데 늦은 날로부터 14일 내 ‘방출 허가서’ 발급
- 신청 및 문의는 식품 안전과 와 식품 및 환경 위생서가 담당
 - 주소 : 43/F, Queensway Government Offices, 66 Queensway, Hong Kong
 - 전화 : (852)2867-5990 또는 24시간 핫라인 (852)2868-0000

III

통관문제사례

- 해당사항 없음